

● 주요목차

1. 비전향 장기수의 현황 및 역사적 의미
비전향 장기수란 누구인가?
국가보안법 - 비전향 장기수 양산의 배경
시대별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들
출소 장기수에게 씌워진 덫 - 보안관찰법
대응 및 구명활동
 2.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활동일지(1989~2000년)
창립 선언문
 3. 비전향 장기수의 삶과 그 실태
비전향 장기수의 삶
비전향 장기수 명단 및 약력
- 부록

비전향 장기수 백서

인권정보자료실
CPh1.20

비전향 장기수 백서

인권정보자료실
CPh1.20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이 시대, 한국의 분단 시대에 고난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비전향 장기수라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념을 위해 일하다가 고생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상을 동조해서도 아니고, 사상을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포 형제라는 민족애에서만도 아닙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제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이 분들의 고통의 의미를 새김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역사의 의미도, 분단 시대의 비극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진실한 고백을 엮었습니다.

- 박이십 목사의 '발간사' 중에서

비전향 장기수 백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2000



출소환영회
(광주교도소, 1999년)



연대활동
(국회의사당, 1998년)



연대활동
(기독교회관, 2000년)



제3회 호도나들이
(제주도, 1994년)



제5회 호도나들이
(지리산, 1996년)



제9회 호도나들이
(강원도 황지, 1999년)



제9회 호도나들이
(강원도 속초, 1999년)

이경구 님 회갑
(1990년)



낙성대
만남의집 방문



최하중 · 김인수 선생 댁 방문
(2000년)

이중환 · 김중종 선생 댁 방문
(2000년)



과천 한백의집 방문(2000년)



봉천동 우리탕제원 방문(2000년)



광주 통일의집 방문(2000년)



갈현동
만남의집 방문
(2000년)



「통일과 기독교」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연대 알레관, 1994년)



통일할아버지들이
참석한 '양심수를 위한
월례기도회'
(감신대, 1995년)



정책토론회
(크리스천 아카데미, 1995년)



인권교실
(아현교회,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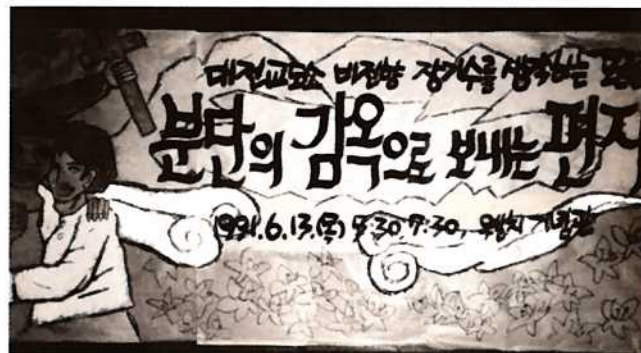
고난모임 실무자의 책상



창립 10돌 기념
감사예배
(감신대, 1999년)



제5회 공연
(정동교회, 1994년)



제1회 공연
(감신대, 1991년)



고난모임 일꾼들의 산행
(북한산, 1993년)

초창기 고난 소식지
(1990년 이전)



회지 <고난함께>
(1994~1996)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



비전향 장기수 백서

● 감사의 글

역사는 고난받는 자에 의해 전개됩니다

박이섭 목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대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교만, 불신, 미움이 권력을 잡았던 낡은 시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화목과 사랑이 가득찬 새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슴을 열고 저 찬란한 광명을 받아들입시다.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문을 닫은 사람은 그대로 어둠에 살게 됩니다.

태평양시대, 곧 평화와 사랑과 변영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한민족은 이 거룩한 시대에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천 년간 고난의 백성이었고, 지난 세기에는 나라를 잃기도 하고, 또 동족이 서로 원수인 줄 알고 상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그랬습니다. 세계의 웃음거리였고, 또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형제인 줄 모르고 철천지원수인 줄 알고 늑대처럼 싸우다가 서로 찢기고 피 흘린 불쌍한 백성, 버림받은 백성, 무시당하던 백성을 하나님은 새 세기의 중심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자, 버림받은 갈릴리인을 역사의 주체로 삼으시던 주님이 우리 한국민을 새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새 역사는 자본이나 과학기술이 도구가 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을 사랑하사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고난받는 자에 의해 전개됩니다. 애굽의 역사는 바로 왕의 역

사가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받은 모세의 역사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는 헤롯의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새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 역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고난받고 멸시받은 한국이 주도할 것이며, 한국의 새 시대도 이 시대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에 의해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임을 압니다. 새 시대는 한국의 평화통일로부터 전개될 것입니다. 반목과 미움의 시대가 가고, 화목과 사랑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인이 됩니다.

이 시대, 한국의 분단 시대에 고난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비전향 장기수라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념을 위해 일하다가 고생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상을 동조해서도 아니고, 사상을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포 형제라는 민족애에서만도 아닙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제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이 분들의 고통의 의미를 새김 없이 하나님의 뜻도, 역사의 의미도, 분단 시대의 비극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새길 수 있도록 그들의 진실한 고백을 엮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로마서 15:7)

아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화목할 때, 새 시대는 우리의 것

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저희는 우리 가슴 안에서 우리는 저들의 가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과 가슴 속의 한이 풀어지는 날, 우리는 아시아의 장자 민족이 되어 새 시대를 영도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나니 우리도 믿는고로 또한 말하노라.”(고린도후서 4:13)

이스라엘을 세계 구원의 선민으로 쓰신 하나님이 21세기 한민족을 태평양 시대의 장자로 쓰시는 날, 온 세계를 밝히는 빛을 발하는 날, 이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 날! 세계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 공의와 평화를 배우러 모일 것입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무시당하던 사람, 고난받던 사람들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이 땅 위에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야 이 시대의 한과 비극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그 때까지 보관하고, 읽고, 또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 주신 이사분들, 실무자들, 후원 교회 및 후원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백서 발간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신 편집위원장 조이제 목사님과 편집위원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땅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 하나 없을 그날까지 서로 힘 돋구며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자격도 충분하다

조이제 목사 (편집위원장)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요한계시록 21:1)

모두가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다. 민족 화해의 날, 통일 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비록 어제는 준비가 부족하여 잘 대처하지 못했다 해도 오늘은 과거와 다른 날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이전의 하늘과 땅, 바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자기의 낡은 껍질을 벗고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겠다.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남북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이제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는 눈으로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다시 닫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기회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흠어진 힘을 모으면 이 땅에는 새 기운이 넘쳐나게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를 나누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 백서』는 새 세상을 여는 작은 터를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전향 장기수’란 말 그대로 전향하지 않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전향서를 거부한 양심수로서,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생겨난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남과 공작원이었으며,

보통 20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동안 감옥에서 사망하거나 사회안전법 혹은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여 지금은 감옥에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란 명칭도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그 동안 비전향 장기수는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민족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기억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다른 부류의 존재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이들에게서도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되었고, 또 이들을 사람으로 되살리는 일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존재를 찾아냈고, 그들을 세상에 알렸다. 옥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우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주춧돌로 생각했기에 헌신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것이었지만 연륜이 쌓여 10년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부족하지만 귀중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10년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고난함께>를 발행하던 편집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난모임의 경험과 역사도 중요하지만 고난모임이 함께하고자 했던 이들 특히 비전향 장기수를 되살리는 글로 묶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정기이사회에서 조금 더 진전시켜 비전향 장기수 백서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다. 이에 편집위원들이 1999년 7월 6일 공식적인 모임을 가져 연말까지 백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필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작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실무 총무가 바뀌는 관계로 집필이 거의 답보상태로 지체되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곧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이 이산가족 방문 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편집위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백서는 발간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백서 집필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 백서 간행의 일차적 목표는 비전향 장기수를 우리 시대에 되살려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전향 장기수가 생겨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을 양산해 내는 역할을 한 국가보안법이 주 추적 대상이 되었다. 이 부분은 김미선 선생이 초안을 작성했는데, 박원순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연구』, 민가협이 장기수 관련 자료,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사이트의 자료들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두 번째 부분은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정리하였다. 이 백서에는 43명의 삶과 사상이 정리되어 있다. 대담을 통해 정리한 이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읽는 사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당한 아픔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과 사람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무시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전향 장기수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송환추진 위원회에서는 102명(이들 중 13명은 사망하였고, 이인모 선생은 이미 송환되었다.)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180명 가량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백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찾았을 때는 큰 기쁨이 되었기에 이름만 남아 있는 사람의 경우도 백서에 기록을 남겼다.

이 백서에서는 '비전향'과 '장기수'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비전향과 전향이란 말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힘을 가진 쪽이 힘이 없는 상대방을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당한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굴복한 것이었지 뜻과 정신까지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형기도 단일 사건으로 7년 이상의 형을 산 것보다 전체적인 형량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송환, 비송환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들이 어느 쪽을 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으로 가는 이들이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이름이 잊혀졌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 때로 그들의 거절로 대담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필진 능력의 한계로 42명을 소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구한다.

집필에는 모두 22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강현, 강희석, 권혁률, 김용현, 김은심, 김자영, 나은, 남기성, 방현섭, 손인선, 신규석, 안해충, 이광섭, 이미나, 이주현, 이현, 정연욱, 정영희, 채희동, 최수연, 최재봉, 홍태의 등으로 선생님들의 삶과 사상을 세련된 필치로 기술했다. 그러나 한편의 책으로 묶어야 했기에 내용과 필체의 통일을 위해 그들이 작성한 초고를 다시 손질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손승현 씨가 비전향 장기수의 사진 일부를 협조해 주었음을 밝히며, 고마운 뜻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비전향 장기수 백서』가 만들어졌다.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큰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담에 응해 준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래도 만들기 위해 수고한 편집위원과 집필자들, 최병천 이사와 밀알기획, 고난받는 이

들과 함께하는 모임의 최재봉 총무, 이미나 간사, 나은 간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제 새 날이 밝아 오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통일 조국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후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힘도 그럴 자격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

차례

감사의 글·박이섭 목사 ... 3
편집인의 글·조이제 목사 ... 6

제1부 · 비전향 장기수의 현황 및 역사적 의미

제1장 비전향 장기수란 누구인가? ... 15

제2장 국가보안법 - 비전향 장기수 양산의 배경 ... 18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1948. 12.~1961. 5.)	18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까지(1961. 5.~1980. 12.)	26
3. 제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 5.)	29
4. 제7차 개정 이후(1991. 5.~1997.)	34
5.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정리	48

제3장 시대별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들 ... 58

1. 시기별·유형별 분류	58
2. 간첩사건의 유형	61

제4장 출소 장기수에게 썩워진 덩 - 보안관찰법 ... 67

제5장 대응 및 구명활동 ... 69

1.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69
2. 장기수 송환 추진 활동	72
3. 국제적 지원	73

제2부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제1장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77

1. 고난모임의 시작	77
2. 고난모임이 하는 일	77
3. 2000년 고난모임이 할 일	78
4. 고난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	80
5. 이렇게 도와 주세요!	80

제2장 활동일지(1989~2000년) ... 82

첨부자료 창립 선언문 ... 85

제3부·비전향 장기수의 삶과 그 실태

제1장 비전향 장기수의 삶 ... 89

김익진/ 양정호/ 장병락/ 우용각/ 박완규/ 김선명/ 김수룡/ 김영태/ 김인서/
김인수/ 김중종/ 이종환/ 이세균/ 이경구/ 오형식/ 신인영/ 신광수/ 손성모/
한장호/ 하종구/ 최하중/ 조창순/ 안학섭/ 장 호/ 안영기/ 김은환/ 함세환/
김석형/ 홍경선/ 김종호/ 김창원/ 정순덕/ 최선목/ 최수일/ 이재룡/ 이공순/
리경찬/ 김동기/ 류락진/ 홍명기/ 이두균/ 안희숙

제2장 비전향 장기수 명단 및 약력 ... 268

1. 생존해 있는 비전향 장기수	268
2. 출소 후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303
3. 옥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306
4. 출소 비전향 장기수 명단	307
5. 비전향 장기수 복 송환 대상자 명단	311

부록

1. 주요 사건 및 연표	323
2. 참고 자료	327
3. 관련 법률 모음	328
1) 국가보안법 / 328	
2)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 342	
3) 보안관찰법 / 352	
4. 통일관련 선언	368
1) 남북공동성명 / 368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370	
3) 남북공동선언 / 374	

비전향 장기수의 현황 및 역사적 의미

제 1장 비전향 장기수란 누구인가?

'장기수'란 말 그대로 오랫동안(장기)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을 지칭한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장기수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법률 팀에서 사건 사례별로 연구하여 마련한 장기 구금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을 일반적으로 장기수 판단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세 가지 영역은 구류 상태(재판의 길이), 선고(범죄에 대한 형량 판결), 그리고 고소·고발 없이 구금하거나 감금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 구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외의 인권 단체 등에서는 장기 구금에 반대하여 78개 나라에 갇혀 있는 수만 명의 양심수 석방 운동이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장기수에 대한 정의가 인권 운동 단체 등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민가협에서는 장기 복역 양심수를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라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 중에서도 '비전향 장기수'라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향서를 거부한 장기수들이다. 곧 과거의 법적 규정에서 가석방될 경우

쓰도록 되어 있는 사상 전향서를 쓰지 않은 장기수란 말이다. 이 사상 전향 제도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방 이후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전향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나의 사상이 잘못됐고, 민족 앞에 사죄하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전향서를 반드시 쓰도록 강요했다. 이런 방법이 효과가 없자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77년 전향서를 '각서'로 바꾸었고, 1980년대 초에는 “사회에 나가면 가족과 '어떻게' 살겠다.”는 내용의 '생활계획서'로 전향서를 더욱 완화시켰다. 또 1980년대 말에는 “잘 살아 보겠다.”는 내용에 도장을 찍으면 전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 들어 이런 전향서 제출을 70세 이상 장기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으나, 김영삼 정권 들어서는 취입식 때 한 번 이런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오랜 기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 제한해 왔던 이 사상 전향 제도는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 10월 '준법서약서'가 신설됨으로 많은 인권단체에서 “전향 제도를 없애고 준법서약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전향 제도의 존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전향 장기수'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전향서를 거부한, 양심수로서 남북한이 분단 대치된 한국의 상황에서 양산된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비전향 장기수들은 대부분 '남과 공작원'들이며, 이들은 민가협이 장기수 정의 기준인 7년보다 훨씬 긴, 보통 20년 이상을 복역하였다. 일반 무기수의 경우에는 16년에서 18년이면 모두 출소를 하는 것이 관례이며, 10년 정도 복역하면 누진 처우 제도에 의해 우량수로 분류되어 완화된 소내 처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완화된 처우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 장기간의 독거 수용과 73년·74년의 살인적인 전향 공작으로

생긴 고질적인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원래 형기를 다 마치고도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소에서 옥살이를 계속해야 했다.

현재는 그 동안 옥중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친 사면으로 출소하여 비전향 장기수가 감옥에 남아 있지 않다. 곧 비전향 장기수라는 명칭은 실재하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세 차례 사면을 통해 26명이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제 2장 국가보안법 - 비전향 장기수 양산의 배경

우리 사회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양산해 낸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1일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존폐 여부를 놓고 사회 각계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유사 법률과는 다르게 그간 인권 탄압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점이 그 폐지를 줄곧 요구해 온 기본 배경인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과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의 성립 배경에서부터 시대별 변천과 적용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과 비전향 장기수의 오랜 관계를 간략히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1948. 12.~1961. 5.)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해방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당시의 민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계질서 재편 구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에게 분할 점령되고, 결국에는

남북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대립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즉 8·15 직후, 미국과 소련을 양 축으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성립하였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

남한에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의 수단으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국가 조직이나 운용의 기본법조차 제대로 갖추기 전의 일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이승만 정권이 성립된 지 2개월 만인 1948년 10월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반란행위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이다. 여순 사건은 당시 절박한 상황에 몰린 남로당이 주도하는 좌익세력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한 군 반란이다. 이후 이 사건은 군경의 반격으로 반란군 주력으로 들어감으로써 유격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반란군에 대한 토벌과 함께 군부 좌익분자 숙청 작업과 남로당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데, 좌익 세력의 폭동과 내란 행위를 처단하여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은 형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1953년 보다 5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이 그 모체가 되었다. 그 후 정권의 독재 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 강화되어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으로 발전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당시 성립된 이승만 정권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한 것이기에 이 정권의 성격인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인 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

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

- 1948. 12. 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 12. 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1949. 1. 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 사건 외 검거 18건
- 2. 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 3. 22.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제·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 5. 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 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 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 처분
-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서명한 남북 통일 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 6. 20. 속칭 '국회프락치 사건' - 국회의원 이문원·노일환(정역 10년), 김약수·박윤원(정역 8년), 김옥주·강옥중·황운호·김병희(정역 6년), 오택관(정역 4년), 이구수·최태규·신성근·서용길·배중혁(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6. 21. 문학가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자 입건
- 7. 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 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 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7. 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8. 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 8. 24. 보안법 영장 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 9. 20.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 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국평의회 가입과 임금인상 파업 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 10. 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 사건 관련자 고흥상 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 11. 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 기간 중 자수자 2300명
- 11. 25.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 명 돌파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은 내란 행위의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것이나, 여순 사건 직후 제정 작업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내란 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이 법안은 기초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여순 사건 직후 그 수습 대책의 하나로 법안 작성 작업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마침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탄생으로 인해 1949년 한 해에 이 법에 의하여 검거, 투옥된 사람만도 118,621명이며,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적용자 수가 폭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고형을 상향 조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 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 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 전향 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 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사상전향 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 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 명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전세의 역전은 이른바 '부

역자'를 양산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 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좀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해 인지된 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자는 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의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국제공산당 사건'과 '전국혁신지도위원회 사건' 등이 그것이다. 즉, 당시 정부는 피난 수도 부산에서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정권 유지를 위한 내부의 전쟁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 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 전체가 반공 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피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또 보수 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선전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에게 큰 위협을 느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봉암 중심의 진보당이 제시한

'평화통일안'이 국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진보당 자체를 불법화하는 진보당 사건을 1958년 조작해 냈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에 독소 조항 삽입하여 개악한 새로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추출·감금한 채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24 보안법 파동'). 이 제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역할을 감당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 인사를 관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었다.

언로를 막은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4월에 이루어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당시 '천주교 경성교구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기에 이미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1959년 들어 <경향신문>이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1959. 1. 11. 석간)이라는 사실과 '여적'(餘滴, 1959. 2. 4. 조간)이라는 칼럼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어지럽히자, 이승만 정권은 간첩 염태식에 관한 기사(1959. 3. 28. 석간)와 간첩 하모 구속 기사(1959. 4. 3. 조간)를 문체 삼고 나왔다. 이 기사가 미리 발표되는 바람에 대간첩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곧 체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또 다른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새 국가보안법이 발표된 후 신문기자로써 처음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보안법 파동에

관한 보도에서 국가 원수의 발언을 허위 보도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여 <경향신문>은 1959년 4월 30일 자유당 정부로부터 미군정 법령 제88호(미군정이 공산 파괴선전을 막기 위해 만든 법령)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간 조치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망걸리 보안법' 사건은 부지기로 발견된다. 곧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의 헌법기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몇 가지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3차 개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꺾는 데 지나친 강압과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하고 '자신의 무덤'을 파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3) 제2공화국 시기

4·19 혁명의 결과로 온 좋게 정권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정권은 형식적으로나마 자유당 독재 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독소 조항들이 많이 빠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제4차 개정). 그러나 이것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없던 '불고지죄'가 신설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은 더 심해졌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2공화국 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다음 두 가지 사건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례다.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

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이 한 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 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 오화섭 교수 사건

연세대 오화섭 교수는 매부인 대남간첩 정연철이 1960년 10월 24일 내방하여 괴뢰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왔다면서 포섭하려 하자 “내 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쫓아 내보냈을 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다. 그 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선고 유예의 숨바꼭질을 통하여 ‘불고지죄와 혈육의 정’이라는 모순과 불고지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구법 제17조 이적선전 조항, 제19조 은거 조항, 제21조 편의제공 조항 등의 폐지로 면소, 무죄, 공소기각 판결과 불기소 사건이 빈발”하자 1961년에 민주당 정권은 ‘반공임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1960년 5월 8일 이교민 등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간첩이 검거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음으로써 국가 안보에 특이한 허점이 노출된 바는 없었다. 이 시기의 혼란은 자유당 독재의 기반에서 해방된 자유의 누림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작은 진통일 뿐이었던 것이다.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까지(1961. 5.~1980. 12.)

1) 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박정희 육군 소장이 이끄는 일부 군인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등 여섯 가지의 ‘혁명 공약’을 내세우며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이들은 쿠데타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5·16 군사 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 행위 또는 반혁명 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961년 6월 22일 제정하였다.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 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는 반공법과 병존하게 된다. 군사 정부는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같은 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제정하여 권력 기반을 마련한 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 세력을 결집하여 1963년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특히 반공법은 4·19 이후 혁신계 세력, 노동 운동, 학생 운동, 구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은 60, 70년대에 술하게 남용되었다. 식민지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 부정한 인혁당 사건(1964), 통혁당 사건(1968),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1974), 남민전 사건(1979), 남북연방론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세대지 사건(1964), 동백림 사건(1967),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1974) 등이 이 법에 의해 생긴 사건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 기간을 통해 꾸준히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61~1980년까지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한 검거인원 수

연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 (기타 정치규제법에 의한 검거인원 수 포함)
1948-1960			(통계자료 없음)
1961	296		297
1962			3,038 (정치활동정화법)
1963	103	86	427
1964	29	79	126
1965	37	84	222
1966	44	104	157
1967	44	110	164
1968	83	168	289
1969	81	323	432
1970	204	368	597
1971	217	276	543
1972	175	507	706
1973	164	260	461
1974	152	228	87
1975	74	328	420
1976	121	386	738
1977	35	322	515
1978	30	208	473
1979	57	199	414
1980	23	136	978
계	1,968	4,167	11,384

3. 제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 5.)

1)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제5공화국을 시작하였다. 특히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항쟁을 폭도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5월 21일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 시설의 파괴·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이론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격적인 활동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의 광범위한 확대를 가져왔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우발적으로 적용되곤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므로 정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자체의 성격 때문이었다. 유신 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민주항쟁’의 유혈사태까지 일으킨 제5공화국 정권에게는 어떠한 법적·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연의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방책이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탄압뿐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국가

■ 1981~1992년까지 국가보안법, 집시법에 의한 검거인원

연도	국가보안법(반공법)	집시법	계
1981	234	155	2,215
1982	184	130	2,166
1983	153	183	2,136
1984	96	249	2,080
1985	178	540	2,163
1986	323	1,245	2,309
1987	432	714	2,419
1988	104	506	2,092
1989	312	413	2,301
1990	414	413	2,404
1991	358	369	2,349
1992	296	246	2,288
계	2,850	5,008	24,707

보안법은 저항 세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단위의 처벌인 셈이었다. 이상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이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양산을 가져오게 하였고, 제5공화국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별명을 얻게 하였던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 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 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을 말해 주는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재판에 기소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가운데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운용이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초기에 애용되다가 잠시 수그러진 다음, 1985년부터 다시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의 적용 숫자는 거의 5배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상황이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1980년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벌여왔던 반체제 세력은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5·17 이후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무너졌고, 다수의 인원이 감옥으로 가야했다. 1981년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숫자는 바로 1980년 민주화 운동 세력의 민주정부 수립 활동에 대한 보복적 적용을 의미하고 있다. 그 후 1982년과 1983년의 소강 상태는 바로 그 같은 활동 붕괴에 따른 침체국면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1984년의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학원의 동요와 김영삼 씨 단식을 계기로 한 재야 정치 활동,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의 결성 등 시국의 긴장 상태가 계속 조성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빈도가 높아져 갔다. 1985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 민주위 사건 등 조직 사건도 잇달아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시대를 열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서노련 사건, 삼민투위 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권과 민족민주 운동 세력간의 대공방이 19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극에 달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기세가 되살아난 1984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의 3년 사이에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726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50명이 불구속기소, 30명이 약식 기소되어 78.6%의 기소율을 보였다. 한편 12.6%에 해당하는 129명이 기소 유예 처리되었다. 이것은 3년 동안 매일 0.7건씩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0.9명씩 입건된 셈으로, 그 동안 격렬했던 탄압과 저항의 역

사를 증명하고 있다.

2) 제5공화국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적용 양상이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항 운동의 이론화는 운동론을 둘러싼 사상과 노선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같은 운동론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 운동에 있어서 '무리·학림 논쟁', 'CNP 논쟁', '자민투와 민민투', 'NL과 CA' 등 무수한 논쟁과 노선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그것은 조직 사건으로 엮어졌다. 노동 운동에 있어서도 1980년대 초의 '준비론과 투쟁론'에서부터 '경제주의·조합주의 논쟁', 'NL과 CA 논쟁'이 이어졌다. 이 기간부터 수없이 벌어졌던 '운동론'과 논쟁들은 바로 현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개혁의 전망을 조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사회 변혁의 이념과 과학적 전망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저항 운동의 조직화는 그만큼 '조직 사건'을 많이 만들어 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되는 이 같은 종류의 사건은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 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 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더욱 그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됨으로써 진정한 국가 안보보다는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넷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은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한 '정권 안보법'의 자리로 올려놓았고, 그 구속자 역시 다른 어떤 규제법에 의한 것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의 결과 시국 관련 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마구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으로써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 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형사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1심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해 온 것이다.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의 시신을 딛고 선 정권이다. 비록 '6·29'라는 곡예를 통해 헌정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저항권에 의해 분명 제5공화국의 악정을 단절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이른바 '5공 청산'의 시대적 요구가 제6공화국의 어깨 위에 지워진 가장 무겁고 절박한 짐이었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이야말로 '5공 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철폐, 그 악법 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 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구속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권 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 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 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 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사원과 재판 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악법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 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숫자는 5공 때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심수의 구속근거 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 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

4) 제6공화국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첫째, 제6공화국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적용 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쓸데없이 구속을 위한 구속을 벌이고 있거나 조직사건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처리 태도와 관행은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가혹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였으며, 안기부의 수사 주도권도 계속 유지되었다.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무죄 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4. 제7차 개정 이후(1991. 5.~1997.)

1) 김영삼 정권 초기

소위 문민정부 출범 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

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 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 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 보고서 제8집)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 교수 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 교수는 국가보안법 연구 등 진보적인 법학 연구를 해 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 자문을 해 주었다는 사실, 사회주의과학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8월 11일 조국 교수 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부분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다.

▶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1993년 11월 18일 대검 공안부는 데이콤의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현대철학 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12월 8일 위 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재판장 유우열 판사)은 1994년 5월 10일 '피고인 김형렬이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게재한 사노맹 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공안당

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인신 구속을 자행해 오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항소 5부는 1995년 5월 17일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 선언'을 일부 게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진상호 씨에 대하여 "공산당 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출판사 탄압

1994년 한 해 동안 출판사 탄압이 부쩍 늘었다. 구속된 출판인 수가 1991년 3명, 1992년 1명, 1993년 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월까지 모두 8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청, '94 국감 자료)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	1994. 3. 19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1990. 5.) 강의 노동자의 철학(1990. 8.) 등 5권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	1994. 3. 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1990. 10.) 90 대도약 청년학생운동(1990. 3.) 등 7권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1994. 4. 20	용해공들(북한 소설)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1994. 6. 10	레닌 '제국주의론'(1981. 12.) 등 4권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권	1994. 8. 20	세기와 더불어(김일성 회고록)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연현	1994. 8. 30	벗(북한 소설)

이상의 책들은 대부분 3~7년 전에 출간된 책들로서, 이전 군사정권 하에서도 구속에 이르는 문제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새삼스레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9년에 작성된 '대검 분석 이적도서 목록'이 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 적용인가를 보여 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 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1994년 4월 19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

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씨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항소부)은 1995년 4월 21일, 소설 『용해공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은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이 소설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서울지방법원 94노4599), 위와 같은 인신 구속이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하겠다.

▶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예술 활동의 영역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1994년 2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 씨 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 순회공연 할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행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희망새 단원 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월 15일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해,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월 29일 "김 씨 등이 전국 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운정에게 징역 1년 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27일 새벽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중부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노래 교실 등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 씨 등은 이미 2년 전에 활동을 그만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공안 정국의 조성

한편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 주석에 대한 조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부영 의원은 7월 11일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우리 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조문론=추모론’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마치 김 주석 흠모자들인 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 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방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도 전남대에 분향소가 설치된 것이 알려지고, 7월 18일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이 난데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마치 숨겨진 진실이라도 폭로된 양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사파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애도 문제를 둘러싸고 박 총장 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

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 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 사냥이라는 말들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 조문 관련 구속

7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와 간사 안희만 씨가 김 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전창일 부의장, 이종린 부의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의장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예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강 목사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7월 18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교정에 “김 주석의 사망을 민족 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 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부회장 최인규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7월 27일 진주시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 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아울러 당시 연행 과정에서 경상대학교 교양과정 교재로 사용되던 『한국사회의 이해』 13권이 압수되면서 소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비록 정대인 씨는 다음날 바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인 8월 2일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억명을 요구하며 대학 교양교재의 내사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라디오 및 TV가 이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8월 3일 일간신문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여름 신공안정국은 그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의 설명은, 경상대 장상환·정진상 교수 등 9명이 1990년 집필하여 4년간 대학 교양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안당국은 이들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도하면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단체는 같은 달 9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이 같은 공안당국의 처사는 학문·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규정짓고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위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소환 및 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동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다가 같은 달 30일 해의 체류중인 백좌흠 교수를 제외한 8명의 교수들이 구인에 응하였다. 이후 이들을 구인한 검찰은 같은 날 장상환·정진상 등 2명의 교수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최태룡·이혜숙·김준형·이창호 교수는 불구속 입건하고, 김의동·송기호 교수는 수사 종결하였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담당판사 최인석)은 같은 달 31일 2인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30일 장상환·정진상 교수 등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준형·이혜숙·이창호·최태룡 교수 및 도서출판 지이 대표 임경숙 씨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 해의 체류중인 백좌흠 교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 이창복 씨, 황인성 씨 구속 사건

서울경찰청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범추본) 공동본부장 이창복 씨와 범추본 집행위원장 황인성 씨를 8월 9일 각각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하였다(법원의 구속영장은 연행 후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 받았음). 이후 1994년 9월 6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9. 선고 94고단6459). 당시 문제가 된 표현물의 내용은, 우리 정부를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예측 정권이라 하였고, 연방제 통일 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 해체,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5년 4월 6일 피고인 이창복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서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런 표현 행위에 대하여도 관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향유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라고 밝혔다.(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1995. 4. 6.판결 95노8)

▶ 각종 조직 사건(95년)

2. 14.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14명 구속
3. 17. 경기대 자주대오 사건 13명 구속
5. 30. 전남대 민족사랑연합회 사건 3명 구속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4명 구속
6. 9. 남한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15명 구속
10. 18.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11. 17.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7명 구속
11. 21. 진보정치연합 13명 긴급구속

▶ 김무용 씨 사건

경찰은 1995년 3월 23일 한국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 김무용 씨를 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 씨는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빨치산 역사 기행'이란 자료집에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 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불고지죄 사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0월 24일 간첩 김동식이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6일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등이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을 만

나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이후 3인 중 우상호 씨는 11월 10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허인회 씨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11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허 씨는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이로서, 이 사건이 다음해 총선을 의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하였다. 한편 허 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 재판장 유원석)은 1996년 11월 8일 허 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박충렬, 김태년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년 11월 15일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성남 청년단체 미래위원장)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 씨의 경우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1989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 모 다방에서... 성명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 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는 식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 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 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 씨는 이 같은 고문을 못 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 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박 씨는 12월 6일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 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 통신 혐의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은 1996년 7월 12일 박 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 씨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년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11 선거를 앞두고 박 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 신청

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월 4일 박 씨에 대하여 보석 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 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범민련 사건

11월 29일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각 지방조직 관련자 29명(의장 강재우 목사, 부의장 이천재, 이종린 등)을 연행하였고,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민련 활동 자료집 등을 압수하였다. 안기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91년 11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북한과 연계해 불순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일부 인물들은 국내 정세를 몰래 수집해 재일 조총련 등 북한 공작 조직에 전파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단체는 민간 통일운동 단체로서 그 동안 6차에 걸친 범민족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 왔고, 북측본부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문을 통일원, 동대문경찰서 등에 전달해 오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새삼스레 갑자기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호도하고, 다음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범민련 관계자들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범민련의 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범민련의 주장 내용은 '연방제 통일, 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김영삼 정권 말기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신년 초부터 각종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각종 조직 사건

1. 9.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사건(애국동맹 사건) 7명 긴급구속 - 5명 무혐의/석방(검찰)
1. 18. 민민학련 사건 5명(모두 현역군인)
1. 20. 민정련 광주지부 사건 5명 구속
2. 4. 사노맹 재건 사건 10명 연행
2. 25. 노나메기 사건 8명 구속(현역군인 2명 포함)
3. 28. 사회주의 학생연합 11명 구속(현역군인 4명 포함)

한편 4·11 총선 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등을 내세우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무차별적 인신 구속이 더욱 심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4·11 총선 이후 7월 11일까지 무려 12건의 조직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과거 활동을 문제삼은 사건들이었다. 예컨대 애국동맹 사건(1992),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사건(1991), 사노맹 사건(1992), 학생활동가조직 사건(1992) 등이 그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3~4년 전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 와해된 상태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46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직장인, 군인, 가정주부 등이었다.(민가협, 4·11 총선 이후 시국관련 급증 현상에 관한 보고서 / 민변 소식지 1996. 7.)

▶ 각종 조직 사건

4. 24~25. 800만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청년회 12명 구속(2명 불구속)
5. 8. 전학련 사건 13명 연행
5. 29. 나라사랑청년회 3명 연행
5. 30. 사노맹 재건 기도 5명 연행
6. 7. 범민련 사건 2명 연행
6. 18~19.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5명 연행

6.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12명 연행
6. 30. 남총련 자주대오 사건 13명 구속(1명 불구속)
7. 2.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2명 연행
7. 6. 애국 크리스찬 청년연합 8명 구속(5명 불구속)

▶ 한총련 사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추전 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 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추전 행사는 그 동안 6차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안당국이 4·11 총선 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 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구속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 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 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 등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 진관 스님 구속

안기부는 10월 1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 씨 등 비전향 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복송을 추진하면서,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 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 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 사람으로부터 4천 달러를 받았으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 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이지 이적 목

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 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월 16일임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 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 받아 재구속 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6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 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었다 하겠다.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월 6~7일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 갔다.

▶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월 11일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 씨 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 유예하였다.

▶ '97년 학생 운동 탄압

1997년은 역사상 가장 가혹하게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고, 특히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에 대한 대규모의 검거 작전이 시작된다. 각 학교 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의 검거와 수배뿐 아니라 각종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구속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지 않는다.

4) 김영삼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대량 구속은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도 항존했던 일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 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신 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을 제외(예컨대 이창복 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서 영장 기각, 박총렬 씨 등 무죄)하면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 구속 시점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조직 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 구속 사태가 일어난다는 점과(예컨대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 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 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예컨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 간첩 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 구속 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 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인신 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엄존하며, 변호

■ 1993~1997년 국가보안법 적용 검거인원 수

연도	국가보안법	계
1993	105	195
1994	389	775
1995	285	623
1996	494	1,269
1997	673	1,372
계	1,946	4,234

인의 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 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 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 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 서적 몇 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 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 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 결과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다.

5.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정리

아래의 표들은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국가보안법의 제정부부터 개정 및 각 정권별 적용 등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시기	구분	(재)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1 공화국	제 정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 10 호 로 제 정, 공포)	여순 사건을 직접적 계기로 좌익세력을 제거하고,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법 제 정	<p>1) 일제 법제의 계승 : 일제하 기득권을 누렸던 친일 반민족적 세력이 1948년 성립된 단독정부와 국회를 그대로 장악하고, 통치수단으로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국가보안법 제정.</p> <p>2) 현행 국가보안법의 원형 : 제정 이후 수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음.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의 개념은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오늘의 국가보안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p> <p>3) 사상탄압법으로서의 성격 :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처벌받게 됨. 따라서 좌익세력의 구체적인 폭동이나 범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좌익세력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는 데 법률의 입법 목적이 있음.</p> <p>4) 분단의 법제화 :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전제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한 결사 또는 집단"(제1조)으로 규정. 따라서 통일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상, 대화하는 행위는 바로 제정 국가보안법 제3조의 협의, 선동 또는 선전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p>	1949년 한 해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거, 투옥된 사람 수:118,62명. 그해 9-10월 사이 132개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시기	구분	(제)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1 공화국	1차개정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 85호로 공포)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대량 구속 사태 발생 - 좌익 사건과 재판 폭주로 처리 지연, 조속한 처형 등의 필요성 주장	<p>1) 최고 법정형 사형제 도입 : 정부참청, 국가변란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사형이 가능하도록 함.</p> <p>2) 미수죄의 신설</p> <p>3) 보호주의 채택 :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라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p> <p>4) 단심제로 전환 : 원래 제정 국가보안법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한 심급 규정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다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됨.</p> <p>5)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 형사소송절차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전향 가능성이 존재하면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구금소에 보내 교화를 하고, 전향을 하여 석방이 되어 나오면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일정한 관찰에 붙인다는 취지. 이 바탕에는 사상의 전향이라는 기본 목적 포함. 전향 제도는 일본 군국주의가 치안유지법 운용과 관련하여 1931년 3월 정식으로 채택한 것임.</p>	<p>효력의 범위에서부터 실제적인 규정과 절차적인 규정을 함께 포함. 제정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인권 유린의 치명적인 요소들을 포함.</p>

시기	구분	(제)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1 공화국	2차개정 (1950년 4월 21일)	1차 개정법률은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실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1차 개정법률은 시행되지 못한 채 제2차 개정법안이 나오게 됨. 즉,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외에 일었던 인권 유린 법률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의도 있었음.	정부의 2차 개정안 : 사형 선고받은 자에 한해서만이라도 단심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고의 기회를 주자는 것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결합하여 선고된 경우 그 집행방법, 기타 소급 조항의 철회 등을 규정.	
	3차개정 (1958년 12월 24일) '24파동' '보안법 파동'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봉암과 간부 7명을 1958년 구속하고, 미군정법령 제55호에 의해 진보당의 정당등록 취소. 계속된 선거 패배, 민심 이반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자유당 정권이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원천적으로 야당의 정치활동 규제와 언론 억압 방안 선택	<p>전문 3장 40조, 부칙 2조로 구성: 제정 당시 좌익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정적의 탄압과 언론의 억압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바뀜.</p> <p>1) 국가 기밀의 개념 확대 : 국가 기밀의 개념을 정치·군사적인 것에서 경제·사회·문화 영역까지 확대.</p> <p>2) 인심혹란죄(소위 언론조항) : "반드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석될 수 없는 언론의 폭력"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설명되나, 판단의 주관적 요건이나 "적을 이름게"라는 결과에 대한 판단의 남용 가능.</p>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1 공화국	3차개정 (1958년 12월 24일) '24파동' '보안법 파동'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봉암과 간부 7명을 1958년 구속하고, 미군정 법령 제55호에 의해 진보당의 정당등록 취소. 계속된 선거 패배, 민심 이반 등으로 궁지에 몰린 자유당 정권이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원천적으로 야당의 정치 활동 규제와 언론 억압 방안 선택	3)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 "...공연히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상의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 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제22조 제1, 2항) 국회의 활동을 비난하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공박하는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걸려들기 십상으로, 언론의 자유 봉쇄. 4) 증거 능력의 문제 :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부인할 경우 그 자백을 증거로 하지 못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예외를 두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 경찰에서의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장려, 조장하게 될 여지 남김. 5) 구속적부심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 : 판사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판사가 보석 결정을 하면 그 날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검사의 즉시항고로 석방을 막으려는 뜻으로 보임.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2 공화국	4차 개정 (1960년 6월 10일)	4·19 혁명 결과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 4·19 혁명이념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 여론의 수용과 독재정권 청산의 일환으로 독소조항이 제거된 상태의 개정	1) 정보수집죄(제12조), 인심혹란죄(제17조 제5항) 등 독소 조항 제거. 2)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만 부분적으로 제거,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적·반민중적·반공적 성격 존치. 3) 국가보안법의 골격인 반국가 단체의 개념 그대로 유지 - 북한을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 4) 불법지역왕래(제6조) 행위를 처벌, 북한 지역을 계속 봉쇄. 5) 불고지죄(제9조) 신설 - 밀고 조장 6) 선동·선전이라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 둠. (제4조) 7) 일반 형사법과 구별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증인의 구인, 유치, 구속기간 등의 특별 규정을 두는 한계 지남.	'24파동' 이전의, 1949년 12월 19일 2차 개정과 비슷. 새로운 국가보안법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3 공화국	반공법 제정 및 5차개정 (1962년 9월 4일)	반공사상으로 무장된 군사 정권의 4·19 이후 터져나왔던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에 대한 민중적 요구와 열망을 봉쇄하기 위해 반공법을 제정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 없이 유지하다 일부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1)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1961년 6월 22일 제정됨.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이 조항으로 '특수반국가행위'죄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게 됨. 2)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됨. 3)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 강화 :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5년 내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는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조항 신설 (제10조의 제2항 신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3공의 전 기간을 통해 꾸준히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5 공화국	제 6 차 개정 (1980년 12월 30일, 제 14차 국가보위입법회의 본회의에서 가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등장한 정권에 대한 광범한 저항을 누를 국단의 처방으로 국가보안법에 종래의 반공법을 흡수, 통합하여 개정	1) 반공법의 규정을 도입하면서 반국가단체가 아닌 비적성 국의 공산계열과의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바꿈.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등에서 종래 반공법과 달리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을 가미함으로써 단순한 교류와 경제적 교역 가능하도록 함. 이러한 주관적 구성 요건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함. 2)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 등에 관해 새로이 신실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등은 24과동 당시 3차 개정법상의 인심혹란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와도 비슷한 언론 제한 조항. 3) 기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처벌 규정 중 수괴는 사형이라고 규정했던 부분을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라고 고쳐 즉시범의 규정 형식을 상태범으로 규정함(제3조 제1항 제1조). 이로써 공소시효 연장의 효과 얻음.	'1981년 부터 1992년 까지 2,850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으로 검거되었다. 저항운동의 조직화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가 적용되어 이같은 종류의 '조직사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 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때문에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5 공화국	제 6 차 개정 (1980년 12월 30일, 제14차 국가보위입법회의 본회의에서 가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등장한 정권에 대한 광범한 저항을 누를 국단의 처방으로 국가보안법에 종래의 반공법을 흡수, 통합하여 개정	4) 많은 부분에서 형량이 증가한 엄벌주의 :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때는 징역 7년 이하에서 2년 이상의 유기형으로(제3조 제2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징역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제7조 제3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나 국외 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은 죄의 예비, 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제8조) 각각 형량을 높임. 5) 반공법상 원호규정의 따라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함 범위 확대 :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부상 또는 사망한 자도 원호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제23조) 6)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에 대한 수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도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함.	1981년부터 1992년까지 2,850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으로 검거되었다. 저항운동의 조직화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되어 이같은 종류의 '조직사건'을 많이 만들어 냈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 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시기	구분	개정 배경	내용 및 특징	결과
제 6 공화국	제 7 차 개정 (1991년 5월 11일 국회의원초청공청산요구받고 있던 노태우 정권과 민자당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짐.	제5공화국 말기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은 '악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 여론이 모아지고 있었음. 개혁입법 개폐를 통한 5공 청산을 요구받고 있던 노태우 정권과 민자당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짐.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점들 1) 반국가단체의 개념 규정 :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 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없앴다고 하나 종래 판례도 이미 단체라고 하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음. 2) '목적' 요건의 추가 : 개정 국보법은 금품수수(제5조 제2항), 잠입·탈출(제6조 제1항), 찬양·고무·동조(제7조 제1항), 회합·통신(제8조 제1항) 등을 수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요건 추가. 무엇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내용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 가능케 함. 3) 국가기밀 개념의 특징 : 국가기밀 조항의 합리적 정리에 의해 확대 해석의 여지를 없앤다는 것이 민자당의 제안 이유이나 종래 부당하게 확대되었던 판례를 입법화하는, 즉 개악된 부분이라고 비판됨. 4) 불고지죄의 일부 축소 : 반인륜적인 범칙인 불고지죄는 축소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함. 5) 국외 공산계열 관련 행위의 폐지 : 구법 제2조 제2항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는 규정 폐지. 제7조, 제8조의 "국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 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 등 삭제. 여기서 '국의 공산계열'은 소련, 중국, 베트남 등을 의미. 이들 국가는 이미 외교관계의 수립 등으로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는 상황.	

제 3장 시대별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들

1. 시기별·유형별 분류

1)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종결 전까지 좌익활동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류

이들의 주류가 '빨치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명 '빨치산 세대'라고도 불린다. 이들이 재판받을 때 1951년에서 종전까지의 상황은 '앞줄 사형, 뒷줄 무기' 식의 요식 행위의 재판과 "돈 없으면 죽고, 5만 환을 내면 사형수가 석방되고, 3만 환밖에 내지 못하면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의 금권재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 대부분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거나 옥사하였고, 유기형은 만기출소, 무기형은 4·19 직후 민주당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간첩죄'를 제외한 무기수에 대해 일괄적인 20년 감형조치가 있어 60년 말에서 70년 초에 모두 석방되었다.

그러나 75년 박정희 정권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과 이데올로기 탄압의 하나로 사회안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청주 보안감호소'로 재구금시켰다. 이당시는 사실상의 영구집권을 꾀하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노골적인 탄압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결국 89년에 사회안전법이 "그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제약을 가하여 왔다"는 비판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받아들여,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당시 전향을 거부하고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51명의 보안감찰 감호자는 모두 출소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위 '빨치산 세대'는 모두 석방된 상태이다.

2) 남파공작원 부류

이들은 주로 종전 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들이다. 70년대 초 들어서는 국제적으로도 오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화해의 기운이 감도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도 이를 반영하듯 70년 박정희의 평화적 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의, 72년 남북적십자 회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73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제안 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북한도 대남 공작을 전면수정, 더 이상 공작원을 보내지 않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을 전후로 하여 좌익활동을 하던 남쪽 출신자이고 남한 단독정부의 성립과 전쟁의 과정에서 월북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실제 월북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내려 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빨치산 세대'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형법상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장면정권의 일괄 감형조치에서 제외되고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40년 옥살이를 한 초장기수들이다.

이들은 대개가 가족이 북에 있거나 설사 남쪽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연좌제'나 이웃으로부터의 시달림 등의 피해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무연고자들이다.

그러나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이들의 귀향이 추진되고 있어 곧 가족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조작 간첩 부류

이들은 70년대 이후부터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 및 제거의 수단으로 조작된 간첩사건의 관련자들이다. 1987년 김병진씨가 쓴 『보안사』라는 책을 통해서 간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남북어부로서 지난 89년 간첩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되었던 김성학씨가 대법원 형사 3부 이재성 판사로부터 무죄확정 선고를 받은 후 그의 수기가 공개되면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간첩'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분단의 과정에서 빚어졌던 월남자나 월북 및 행방불명 가족, 혹은 남북귀환어부, 재일교포 등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졌거나 가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은 이 가능성을 고문으로 확대 조작하여 기정사실로 만들어 왔고,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법 자체의 비상식적인 애매함과 '반공'이면 무엇이건 가능했던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가 이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훌륭한 방과제가 되었다.

4) 조직적인 사건과 관련된 부류

이러한 부류의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남민전 사건, 구미 유학생 사건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대의 흐름 속에서 통일운동 등과 관련하여 일어난 조직사건으로 이 외에 소위 '통일 방북인사' 부류가 있고 사노맹 사건 등의 장기수가 있다.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이나 잠입탈출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으로 여타 장기수와 마찬가지로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 정부 초기에 발생한 울산 '영남위원회'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발생하였다.

2. 간첩사건의 유형

대체로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장기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구금 양심수'란 대체로 간첩사건으로 인한 복역자들과 일치하게 된다. 이 간첩사건 중에서도 정권안보 차원에서 과거 많은 사건들이 조작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월북 및 행방불명자 가족사건

전쟁 때까지 좌익활동을 하다가 월북했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들의 남한 거주 가족들이 그 월북가족과의 관계로 '고정간첩'의 혐의를 받은 경우. 이 유형의 가족들은 전쟁 이후 오랫동안 대공수사기관의 사찰대상이었다. 북에서 혈육이 내려오거나 이상한 소문만 있어도 이들은 '고정간첩'으로 몰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언제나 고문을 동반하게 된다. 다음의 두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

• 진도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 : 6·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 박영준이 대남공작원으로 남파되어 처(이수례), 동생(박경준), 장남(박동운), 차남(박근홍), 매제(허현) 등을 중심으로 진도에서 1957년부터 지하당을 조직해왔다는 것으로 박동운은 두 차례(1965. 5, 1971. 10) 박영준과 함께 입북했다는 혐의를 받아 81년 3월에 불법 연행되어 2개월간 고문수사 받고 무기형 선고.

• 이창국 장로 사건 : 인천에서 문구점을 경영하던 중 1984년 5월 안기부에 연행, 76일 간의 불법 고문수사 받음. 해방 후 좌익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형, 누나, 동생이 남파되어 이창국을 접선, 1962년 8월에 형과 함께 월북하는 등 25년간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구속. 본인은 완전 조작이라고 주장.